

P2P 결제의 이상, 크립토 카드의 현실

크립토 카드가 드러낸
국경 기반 과세체계의 정보 단절

초안 제출일: 2026-08-18

최종 승인일: 2026-09-23

About

메타노미아는 크립토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연구·분석하는 싱크탱크입니다.

© 2026 Metanomia. All rights reserved.

Researcher

박민구 Mingu Gordon Park

Corresponding Author

오태민 Taemin Oh

Contents

Executive Summary	3
들어가며	5
01 P2P 결제에서 크립토 카드로: 리테일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의 패권 이동	6
02 크립토 카드 발급의 이면: 분절에서 수직 통합으로	10
03 크립토 카드와 온체인 정산의 결합	14
04 리닷페이와 이더파이를 통해 본 크립토 카드 비즈니스 지형	18
05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그리고 탈출구로 부상한 크립토 카드	24
결론	27
참고문헌	30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보고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투자 등 전문적인 자문이나 효력을 갖는 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세무 처리 및 관련 법적 판단은 개인의 거래 형태와 최신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인된 세무·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를 바탕으로 행한 어떠한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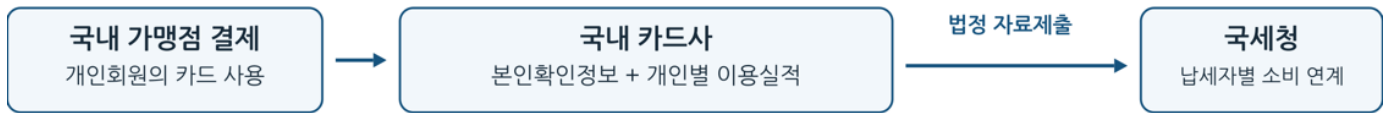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국내 거래소를 거쳐 원화로 환전·출금되는 순간을 포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비자·마스터카드망과 연계된 해외 발급 크립토 카드는 이 전제를 비껴간다. 이용자는 온체인 자산으로 국내 가맹점에서 곧바로 원화 정산 소비를 누리며, 특히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담보로 맡긴 뒤 스테이블코인을 차입해 쓰는 담보 차입형 모델은 결제 시점에 담보자산의 양도가 발생하지 않아 현행 과세 관계가 불명확하다. 그러므로 크립토 카드는 2027년 과세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구멍이 될 수 있다.

이 새로운 소비 경로가 과세 행정에 남기는 공백은 정보와 과세 기준 양쪽에 걸쳐 있다. 국내 매입망에는 결제 일시와 금액, 가맹점만 남고, 누가 어떤 자산으로 결제했는지는 해외 발급사의 서버에 격리된다. 당국은 ‘얼마를 썼는가’는 볼 수 있어도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한 국제 공조 없이는 ‘누가 어떻게 얻은 소득으로 썼는가’를 특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정보가 확보되더라도 담보 차입형에는 단계별로 확정된 과세 기준이 없다. 결제 때마다 자산을 매도하는 직불형은 매 결제가 양도이지만, 담보 차입형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부채를 일으키므로 과세시점을 사실상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볼트 예치, 담보 설정, 청산과 상환 중 어느 단계에서 과세관계가 발생하는지는 현행법과 공개된 과세지침만으로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그 결과 담보 차입형은 당국의 정보·과세 통제에 공백을 만들고 과세 이연 가능성을 제공하며, 국내 이용자가 늘수록 직불형보다 큰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과세 사건의 해석기준을 담보 차입형 구조에 맞춰 단계별로 확정해야 한다. 볼트 예치가 대여에 해당하는지, 담보 설정은 양도담보 법리에 따라 비과세인지, 강제 청산과 상환은 양도인지를 명시하고 그에 맞는 신고 서식을 갖춰야 한다. 둘째, 끊어진 정보를 잇는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2027년 시작되는 국가 간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와 국내 매입망의 결제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고, 거래 규모에 비례해 해외 발급사의 자료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금융위원회 주도의 샌드박스 특례 확대를 활용해 풀스택 크립토 카드 발급사를 실증 대상으로 검토하되, 과세자료 제출을 지정 조건으로 걸어 국내 규제의 시야 안에서 경쟁 가능한 대안을 키워야 한다.

FIGURE 01 국내 발급 카드와 해외 발급 크립토 카드의 과세 정보 연계 구조 비교

01 국내 발급 카드로 국내 가맹점 결제



02 해외 발급 크립토 카드로 국내 가맹점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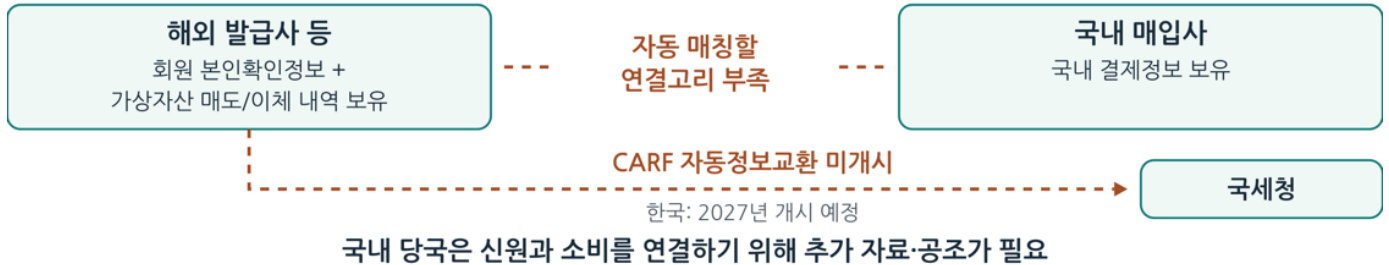


FIGURE 02 크립토 카드 유형에 따른 과세 이벤트 발생 여부 비교

A 자산 매도형 직불카드



B 자산 담보 차입형 신용카드



들어가며

비트코인(Bitcoin)이 처음 제시한 ‘탈중앙화 개인 대 개인(Peer-to-Peer, P2P) 전자화폐 시스템’의 이상과 달리, 암호화폐를 이용한 P2P 결제는 아직 일상적인 소비 영역에 자리 잡지 못했다. 비트코인의 느린 최종 정산과 높은 수수료는 라이트닝 네트워크(Lightning Network)로, 가격 변동성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으로 대안을 모색했지만, 소비자 보호와 세무 처리, 가맹점 수용 인프라 등 기존 결제 시스템이 축적해 온 제도적 기반까지 대체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온체인 자산이 일상적인 결제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 새로운 P2P 결제망을 구축하는 대신 이미 전 세계에 구축된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의 결제망을 활용하는 ‘크립토¹⁾ 카드(Crypto Card)’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온체인 자산을 보유한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가맹점은 자신이 암호화폐 결제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할 필요 없이 현지 법정화폐로 대금을 정산받는다. 여기에 카드 발급과 결제, 암호화폐 환전, 정산을 통합하는 풀스택 인프라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체인 정산이 결합하면서 크립토 카드의 확장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P2P 결제가 레거시²⁾ 결제망을 대체하려 했다면, 크립토 카드는 오히려 레거시 결제망을 이용해 온체인 자산을 실물경제로 연결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결제 시장의 새로운 경쟁 구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온체인 자산이 크립토 카드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채 일상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게 되면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자금의 흐름과 국가 단위로 구축된 금융·과세 체계 사이에 새로운 간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립토 카드의 확산은 새로운 결제수단의 등장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경을 전제로 설계된 금융·과세 체계가 국경 없이 이동하는 온체인 자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먼저 P2P 결제의 한계와 크립토 카드의 성장을 살펴보고, 풀스택 발급 인프라와 온체인 정산이 그 확장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어 리닷페이(RedotPay)와 이더파이(ether.fi)의 사례를 통해 온체인 자산이 레거시 카드망을 거쳐 실물 소비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방식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둔 한국에서 크립토 카드의 확산이 갖는 금융·과세상의 함의를 검토하고, 새로운 자금의 흐름을 포착하는 동시에 과세정보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본 보고서에서는 ‘크립토(crypto)’를 암호화폐, 암호자산, 온체인 자산, 가상자산 등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다만 국내 법령 및 규제 맥락에서는 법정 용어인 ‘가상자산’을, 금융 및 인프라 구조를 다룰 때는 ‘암호자산’ 또는 ‘온체인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화폐의 기술적 특성을 강조할 때는 ‘암호화폐’를 문맥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2) 본 보고서에서 ‘레거시(Legacy)’는 블록체인 및 웹3(Web3) 인프라와 대비되는 전통 금융 시스템을 지칭한다. 은행 중심의 결제·송금망, 국제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 신용카드 네트워크(비자, 마스터카드 등)와 같이 현재 널리 사용되는 제도권 금융 인프라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P2P 결제에서 암호화폐 카드로: 리테일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의 패권 이동

① 정체된 P2P 결제, 폭발하는 암호화폐 카드

암호화폐 카드는 사용자가 암호화폐 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에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자산 잔액을 기존 비자·마스터카드 등 레거시 카드 결제망과 연동하여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즉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불·직불·신용카드를 의미한다. 최근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액의 폭발적 증가와 암호화폐 카드의 급격한 시장 점유율 확대가 두드러진다. 아르테미스(Artemis)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전체 결제 규모는 2023년 1월 약 19억 달러에서 2025년 8월 기준 102억 달러로 5배 이상 급증했으며, 2025년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로도 137% 이상 가파르게 성장했다.³⁾ 특히 리테일 결제 시장 내에서는 온체인 P2P 결제와 암호화폐 카드 결제의 성장 격차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온체인 P2P 결제 규모가 연평균 복리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 5.3%에 그치며 정체된 반면, 암호화폐 카드를 통한 결제 규모는 CAGR 106.2%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³⁾ 암호화폐 카드의 높은 성장률에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출발점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2025년 8월 월간 결제액 기준 연환산(Annualized Run-Rate) 거래 규모가 약 180억 달러에 달해 기존 P2P 결제(약 190억 달러) 규모에 빠르게 근접했다.⁴⁾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체 리테일 결제의 극소수에 불과했던 암호화폐 카드가 이제는 P2P 결제 규모와 어깨를 견주는 수준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지표는 암호화폐가 지갑 간 P2P 송금을 넘어, 암호화폐 카드를 매개로 일상적인 가맹점 결제에 활용되는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암호화폐 카드 결제액의 급증은 암호화폐 카드 발급 생태계의 확장과 이에 따른 사업자 간 고객 유치 경쟁이 맞물린 결과다. 과거 암호화폐 카드는 주로 대형 중앙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2025년 들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신흥 카드 발급 인프라 및 온체인 핀테크 사업자와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공급 기반이 빠르게 넓어졌다.⁵⁾ 낮아진 시장 진입 장벽으로 경쟁이 심화되자, 각 카드 프로그램들이 서비스 수수료를 낮추는 동시에 파격적인 캐시백 및 리워드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제시하며 결제 거래량의 급격한 성장을 견인했다.

3) FIGURE 03과 FIGURE 04 참조. Kim, Patrick. "Stablecoin Payments at Scale: How Cards Bridge Digital Assets and Global Commerce." Artemis Research, January 16, 2026.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research.artemis.ai/p/stablecoin-payments-at-scale-how>

4) 본문에서 언급된 암호화폐 카드 시장(180억 달러)과 기존 P2P 결제 시장(190억 달러)의 규모는 모두 2025년 8월 기준 월간 결제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연환산 추정치(Annualized Run-Rate)이다. 원데이터로 사용된 8월 월간 결제액은 두 수치 모두 Artemis 자료(FIGURE 04 참조)를 활용하여 저자가 직접 계산하였다.

5) Green, Jack. "The Future of Payment Systems: Crypto Cards Explained." Medium, February 13, 2026.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medium.com/@jackgreencrypto/the-future-of-payment-systems-crypto-cards-explained-decb06ae162a>

② 소비자 보호의 딜레마와 크립토 카드의 절충 전략

그렇다면 왜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온체인 P2P 결제는 수수료 절감과 빠른 정산 속도에도 불구하고, 리테일 결제 시장에서 크립토 카드에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하게 되었는가? 이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보아야 한다.

쇼피파이(Shopify)에 통합되어 수백만 가맹점에 지급 기반 원클릭 USDC 결제를 지원하는 베이스페이(Base Pay), 400밀리초 만에 건당 \$0.00025라는 극소의 수수료로 QR 결제를 끝내는 솔라나페이(Solana Pay), 그리고 수백 가지 암호자산을 받아 즉시 USDC로 정산해 주는 코인베이스 커머스(Coinbase Commerce)는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기존의 ‘엔드투엔드(End-to-End) 카드 결제 네트워크’와 직접 경쟁하는 온체인 결제 솔루션들이다. 승인, 네트워크 라우팅, 가맹점 수용, 소비자 인터페이스를 아우르는 이들 인프라는 기존 카드망 대비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고,⁶⁾ 며칠씩 걸리던 정산을 24/7 실시간 정산으로 전환하며 가맹점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힘든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혁신적인 솔루션들이 비용과 속도를 위해 희생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 장치’였다. 온체인 P2P 결제가 리테일 결제 시장에서 널리 확산되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기존 카드망이 기본적으로 제공해 온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에는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온체인 환경에서 레거시 카드망과 동등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려면 별도의 중개·보험·분쟁 해결 체계를 추가로 구축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따른다.

사전 계약과 분쟁 해결 능력으로 상호 신뢰를 확보한 주체들 간의 B2B(Business-to-Business) 거래에서는, 낮은 송금 수수료와 빠른 속도라는 온체인 결제의 이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반면, 리테일 결제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익명의 상대방’과의 거래다. 소비자가 생전 처음 방문한 가게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결제 기능이 아니다. 물건이 오지 않거나, 가맹점이 파산하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전망’이다. 그러나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⁷⁾을 핵심 속성으로 지닌 블록체인 트랜잭션의 특성상, 카드망이 제공하는 차지백(Chargeback, 지불 거절 요청)이나 분쟁 중재, 무과실 책임(Zero Liability) 보장에 어려움이 따른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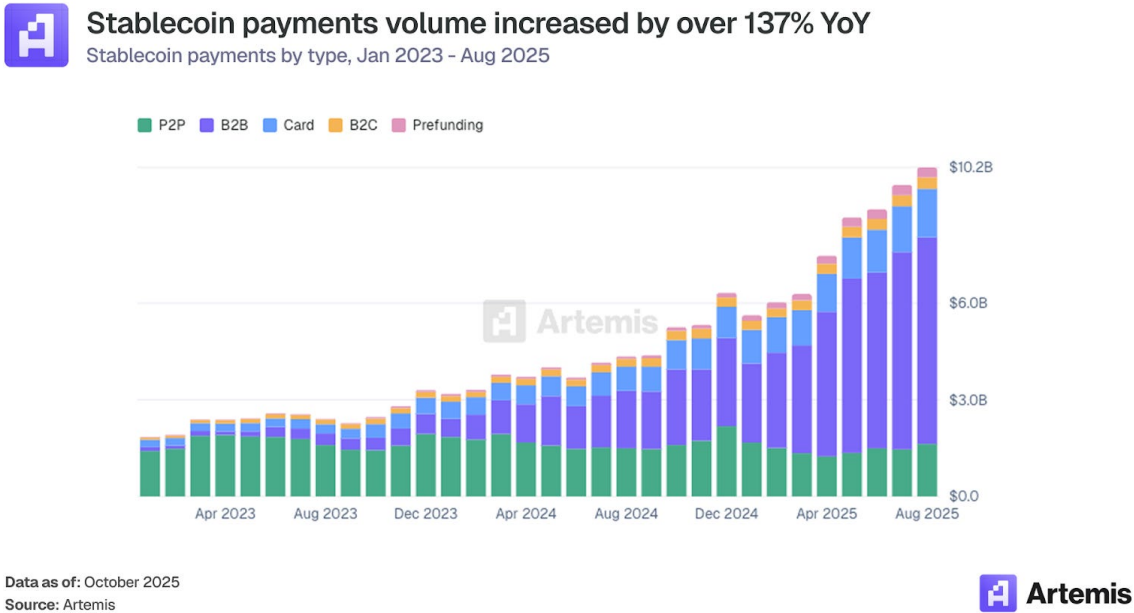
6) 일반적으로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 같은 기존 신용카드 결제망을 이용할 경우 가맹점은 결제 금액의 2~3% 이상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MDR, Merchant Discount Rate)와 건당 고정 처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원스톱 온체인 결제 인프라인 베이스페이나 코인베이스 커머스는 단 1%의 가맹점 수수료만 부과하며, 솔라나페이와 같은 순수 온체인 QR 결제 모델의 경우 비율 기반의 수수료 없이 건당 약 \$0.00025 수준의 극소한 네트워크 수수료(Gas fee)만 발생한다.

7) 결제완결성: 금융 거래에서 자금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법적·기술적으로 거래를 취소, 반복, 철회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통 금융에서는 중앙화된 중개기관(카드사, 은행 등)이 법적·제도적 합의하에 이를 결정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분산 합의 알고리즘(PoW, PoS 등)과 암호학적 검증을 통해 트랜잭션이 블록에 영구히 기록되는 순간 불가역적인 최종성이 성립한다.

8) 물론 온체인 환경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조건부 에스크로나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통한 분쟁 해결, 혹은 결제 게이트웨이의 자체 보증 풀을 구축하는 등의 대안이 존재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리테일 환경에서 온체인 소비자 보호 장치를 구현하려는 순간, 거래를 묶어두는 에스크로는 ‘실시간 정산’이라는 속도의 이점을 지워버리고, 분쟁 중재와 보증 기금 마련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초저수수료’라는 가격 경쟁력을 스스로 잠식한다. 즉, 온체인 P2P 결제의 장점들을 희석시키면서 온체인 상에 소비자 보호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마스터카드의 최고제품책임자(CPO) 요른 램버트(Jorn Lambert)는 공식 기고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단독으로는 수십억 명에게 카드 결제가 신뢰받고 선호되도록 만든 글로벌 가맹점 수용성, 보안성, 신뢰성, 소비자 보호, 그리고 확장성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⁹⁾ 강력한 다중 보호 장치에 익숙한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온전히 짊어지며 온체인 P2P 결제로 갈아탈 유인이 부족하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크립토 생태계가 선택한 실용적인 절충안이 바로 ‘크립토 카드’다. 크립토 카드는 백엔드에서 크립토 자산의 높은 유동성을 활용하면서도, 프론트엔드에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수십 년간 구축해 온 강력한 소비자 보호 프레임워크와 거대한 가맹점 네트워크를 통째로 빌려 쓰는 절묘한 타협점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온체인 소비자 보호 기술이 고도화되거나 제도적 보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레거시 카드망의 신뢰 인프라를 차용한 크립토 카드가 리테일 결제 시장에서 온체인 P2P 결제보다 강력한 비교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03 스테이블코인 유형별 결제 규모 및 추이



(출처: Artemis, 2023.01 ~ 2025.08)

③ 익숙함을 해치지 않는 침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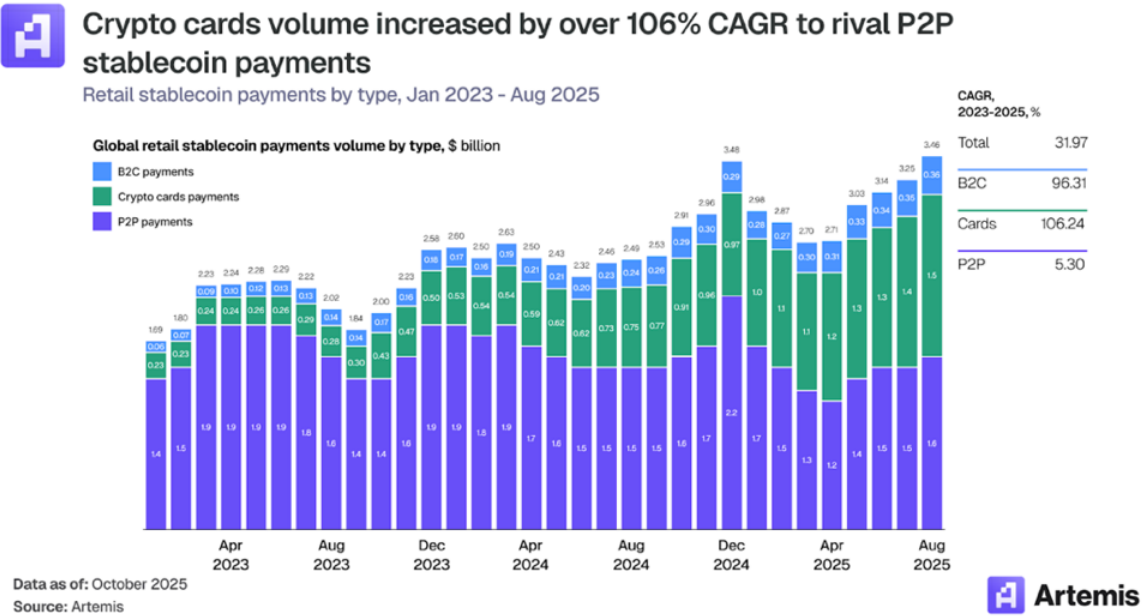
짧은 정산 시간과 낮은 수수료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물 리테일 시장에서 온체인 P2P 결제가 마주한 규제, 세무·회계, 수용 인프라의 벽은 여전히 높다. 전 세계 수억 개의 실물 상점 점주들에게 온체인 지갑 개설과 개인키(Private Key)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P2P 결제를 직접 수용할 전용 POS (Point of Sale) 단말기 등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도 부족하다. 설령 점주가 온체인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직

9) Lambert, Jorn. "Bringing real utility and global scale to stablecoins" Mastercard News & Trends, June 23, 2025. 접속일: 2026년 9월 3일. <https://www.mastercard.com/global/en/news-and-trends/stories/2025/mastercard-stablecoin-utility-and-scale.html>

접 받더라도 이를 현지 법정화폐로 매번 환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복잡한 세무 증빙과 규제 준수 (Compliance) 리스크까지 온전히 짊어져야만 한다. 기존 POS 시스템처럼 매출 데이터가 세무 장부에 자동 연동되는 ‘자동 기장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맹점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받는 것은 극심한 운영적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이 거대한 운영적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해법이 바로 크립토 카드다. 소비자가 매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순간, 카드 발급사(Issuer)는 백엔드에서 소비자의 코인 잔액을 즉시 팔아 달러 등 법정화폐로 전환한다. 이후 비자·마스터카드 네트워크의 정산 시스템을 거쳐, 실제 법정화폐 대금이 매입사(Acquirer)를 통해 가맹점으로 입금되는 구조다. 이 메커니즘 덕분에 점주는 평소와 다름없는 현지 법정화폐로 대금을 정산받게 되며, 고객이 크립토 카드를 썼는지조차 인지할 필요가 없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세무와 규제 리스크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고,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이유도 사라진다.

FIGURE 04 스테이블코인 리테일 결제 수단별 규모 및 추이



(출처: Artemis, 2023.01 ~ 2025.08)

결국 크립토 카드가 제공하는 효용은 분명하다. 가맹점과 소비자의 기존 행동 양식을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도, 레거시 카드망을 보호막 삼아 스테이블코인이 규제·세무 장벽을 넘어 실물 리테일 시장으로 안전하게 스케일업하도록 돕는 것이다.

크립토 카드 발급의 이면: 분절에서 수직 통합으로

크립토 카드의 익숙한 결제 경험 뒤에는 온체인 자산과 레거시 카드망을 연결하는 ‘카드 발급 인프라(Issuance Infrastructure)’가 있다. 2장은 소비자에게 보이는 카드 프로그램과 글로벌 결제망 뒤에서 이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발급 인프라는 카드 사업의 비용과 확장성을 좌우하는 기반인 동시에, 이용자의 신원과 결제정보를 연결해 관리하는 핵심 접점이기도 하다. 과세·감독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결제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당국이 그 기록을 실제 이용자와 연결해 파악할 수 있는지다. 따라서 누가 카드를 발급하고 어느 국가의 규율 아래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크립토 카드의 시장 구조뿐 아니라 제도적 함의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①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 카드 발급 인프라

소비자가 마주하는 크립토 결제의 세계는 직관적이고 단순하다. 카드 앱에서 간편하게 암호자산을 예치하고, 비자나 마스터카드 로고가 새겨진 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두 주역, 즉 크립토 카드 프로그램과 글로벌 결제망으로 향한다. 그러나 이 매끄러운 결제 경험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가 숨어 있다. 불과 수초 만에 결제가 완료되는 동안, 지갑 속 온체인 자산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결제를 승인하며 결제 금액을 비자·마스터카드 결제망으로 쏘아 보내는 작업은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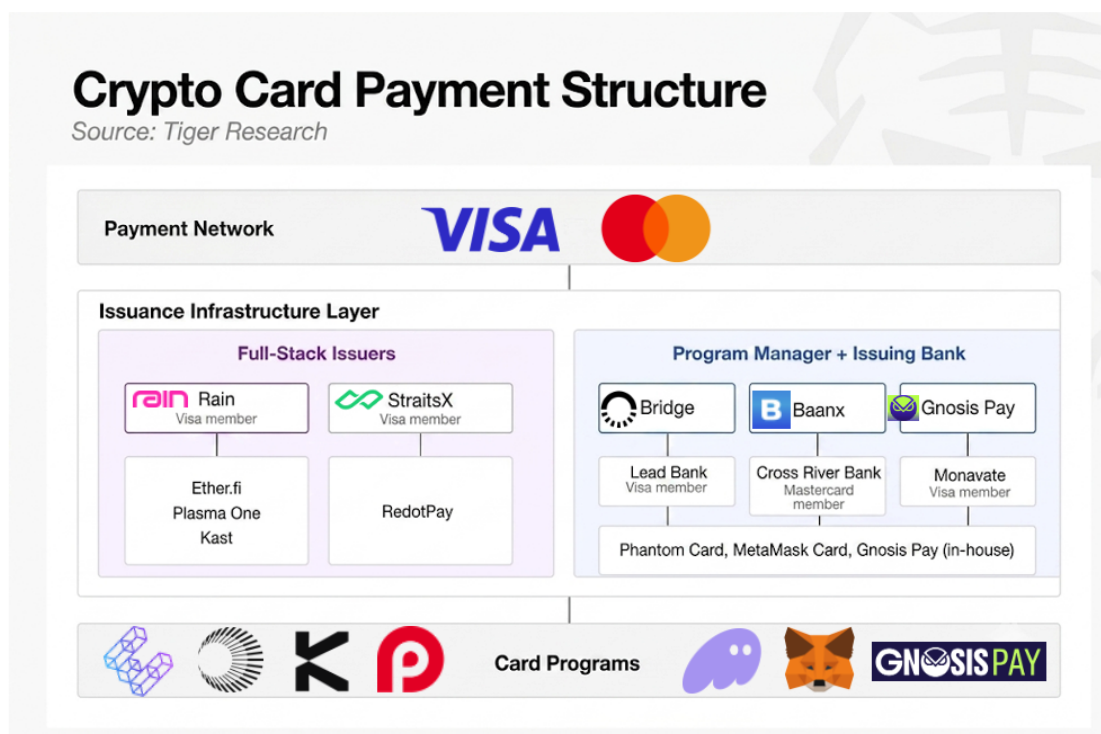
그 답이 바로 ‘카드 발급 인프라’이다. 발급 인프라는 실물·가상 카드를 발급하고, 사용자가 결제할 때 블록체인 지갑의 온체인 자산을 기존 카드 결제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승인과 환전이 이뤄지게 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 신원 확인(Know Your Customer, KYC)과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등 금융 규제 준수까지 담당한다. 이용자에게 보이는 것은 카드 앱이지만, 그 뒤에서 온체인 자산과 기존 금융 시스템을 실제로 연결하는 것은 발급 인프라인 셈이다. 이 인프라 레이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 프로토콜이나 크립토 핀테크라 할지라도 자사의 크립토 카드를 리테일 결제 시장에 성공적으로 내놓기 어렵다. 결국 크립토 결제 대중화의 성패는 온체인과 레거시 결제망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연결해 내느냐, 즉 카드 발급 인프라가 보여줄 진화의 속도에 달려있다.

②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르는 풀스택 발급 플랫폼

발급 인프라는 크립토 카드를 구현하는 기술·규제 인프라를 제공하며, 크게 프로그램 매니저(Program Manager)와 풀스택 발급 플랫폼(Full-Stack Issuance Platform)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프로그램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주요 회원사 라이선스(Principal Membership)를 보유한 발급은행(Issuing Bank)과 협력한다. 이 구조에서 발급은행은 자체 라이선스가 없는 프로그램 매니저에게 은행식별번호(Bank Identification Number, BIN)을 제공하여 카드 발급을 가능하게 해준다. 프로그램 매니저는 자체 온체인 서비스 플랫폼과 고객을 보유한 브랜드 제휴사(Co-brand Partner)¹⁰⁾에게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 연결 통로)와 카드 발급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브랜드 제휴사는 자체적인 카드 발급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하지 않고도 자사 브랜드의 크립토 카드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매니저는 이용자 지갑 내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등)이 실물 결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발급은행 및 카드망과의 환전·정산 연계를 비롯해 결제 승인, 규제 준수 등 카드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FIGURE 05 크립토 카드 결제를 구현하는 3가지 상호의존적 레이어



(출처: Tiger Research, 메타노미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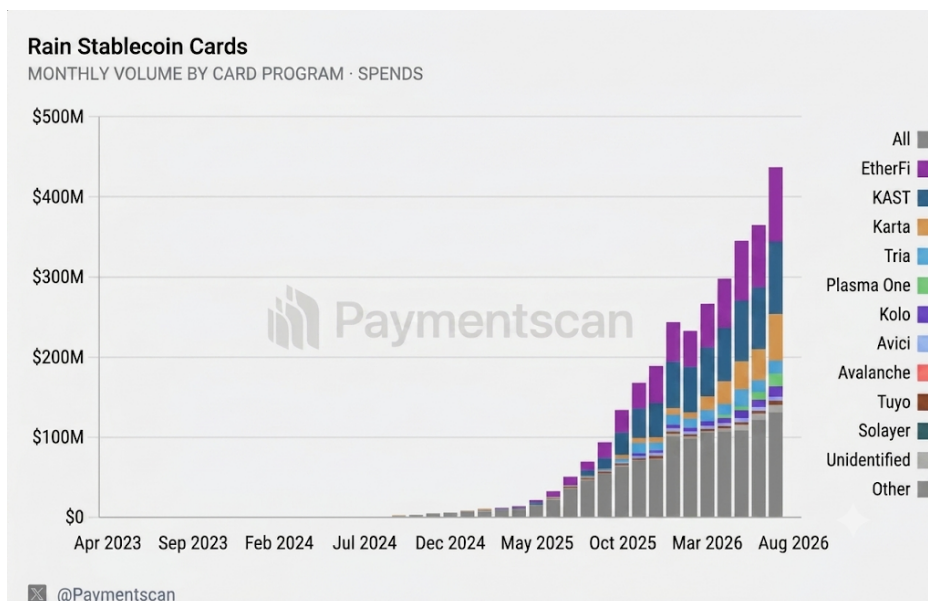
미국에서 출시된 메타마스크 카드(MetaMask Card)가 이러한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다. 메타마스크(MetaMask)가 소비자와 접하는 브랜드 제휴사로서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뱅크스(Baanx)가 프로그램 매니저로서 카드 발급·결제 인프라를 지원한다. 크로스 리버 뱅크(Cross River Bank)는 발급은행으로 참

10) 중앙화 거래소(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등), 핀테크(레볼루트, 리닷컴 등), Web3 플랫폼(이더파이, 에테나 페이 등),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메타마스크, 트러스트 월렛, 렛저 등)는 브랜드 제휴사로서 크립토 카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발급 인프라와 협력한다. 이들 브랜드 제휴사는 공통적으로 자체 플랫폼 내에 카드 신청 및 결제 내역 조회 등을 위한 사용자 경험 환경을 구축하고, 실시간 결제 요청에 따른 암호화폐 잔액 확인 및 차감(내부 승인 로직)을 처리하며, 자사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과 크립토 리워드 지급 등 최전선에서 고객 접점을 전담한다.

여해 카드 발급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실제 가맹점 결제는 마스터카드의 글로벌 결제망을 통해 이루어진다.¹¹⁾

이러한 구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최근에는 프로그램 매니저와 발급은행 역할을 하나로 합친 풀스택 발급 플랫폼이 등장하며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레인(Rain), 립(Reap), 스트레이츠 엑스(StraitsX)와 같은 풀스택 발급사는 비자의 주요 회원사 라이선스를 직접 획득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스폰서 은행에 의존해야 했던 카드 발급과 네트워크 정산 기능까지 자체 플랫폼 안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이들은 스폰서 은행으로 유출되던 수수료 마진을 내재화하며 수익성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나아가 풀스택 발급 모델은 단일 플랫폼이 카드 발급부터 결제 프로세싱, 크립토 환전, 최종 정산에 이르는 전체 밸류체인을 일원화함으로써 복잡한 다중 벤더 구조에서 비롯되는 운영 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이처럼 네트워크와의 단일 접점을 바탕으로 결제를 자체 시스템에서 직접 처리하면, 결제 승인율과 거래 신뢰도가 대폭 향상될 뿐만 아니라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운영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레인과 스트레이츠 엑스는 카드 발급부터 비자 네트워크와 연계된 달러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정산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풀스택 발급사다. 이들은 이러한 통합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각 이더파이와 리닷컴의 카드 프로그램을 뒷단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FIGURE 06 풀스택 발급사 레인을 통해 급성장하는 크립토 카드 프로그램들



(출처: Paymentscan, 2023.04 ~ 2026.07)

기술적 확장성 측면에서도 풀스택 인프라는 차세대 결제 경험을 구현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애플페이·구글페이·삼성페이 연동부터 모바일·웨어러블 결제, 토큰화(Tokenization) 서비스, AI 기반 자율 결제에 이르기까지 고도화된 기능들은 발급과 결제 프로세싱 시스템 간의 밀접한 결합 없이는 즉각적인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이 성숙해지고 결제 서비스의 기능과 구현 요건이 고도화됨에 따라, 파편화된

11) MetaMask. "MetaMask and Mastercard partner to launch the US MetaMask Card, with first-time availability in New York." MetaMask News, February 26, 2026.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metamask.io/news/metamask-and-mastercard-partner-to-launch-the-us-metamask-card>

인프라 대신 시스템 유연성과 제어권을 확보한 풀스택 발급 모델이 크립토 카드 생태계의 새로운 표준이자 강력한 경쟁 우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크립토 카드 프로그램들이 전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의 발급 인프라를 살펴보면, 다수의 카드 프로그램이 소수의 발급 인프라 사업자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테일 크립토 결제의 실질적인 주도권과 시장의 거대한 파이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발급 인프라를 지배하는 자들에게로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풀스택 구조는 크립토 카드가 국경을 넘어 확장될수록 새로운 제도적 대응을 요구한다. 해외 발급사가 KYC부터 카드 발급, 결제 승인, 암호자산 환전과 정산까지 직접 수행하는 반면, 발급된 카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글로벌 결제망을 통해 발급사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여러 국가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카드 결제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가맹점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용자의 신원정보와 이에 연결된 카드 결제정보는 해외 발급사가 관리하게 된다. 즉, 카드가 실제로 사용되는 국가와 이용자의 신원·결제정보가 관리되는 국가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크립토 카드와 온체인 정산의 결합

앞서 살펴본 크립토 카드의 확산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결제수단의 변화뿐 아니라, 그 이면에서 실제 자금이 이동하는 정산 구조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유통되는 상당수의 크립토 카드는 결제 시 암호자산을 법정화폐로 환전한 뒤 레거시 은행망을 통해 정산하는 과도기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레거시 정산망의 시간적·비용적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카드 결제망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백엔드 정산 자체를 상시 가동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완결하려는 인프라 전환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사와 주요 카드 발급사들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결제 네트워크의 양대 축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온체인 정산 레일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 퍼블릭 블록체인과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을 시스템에 전격 통합하고 있다.

① 카드 결제의 두 레이어: 승인과 정산

시장에서는 흔히 "스테이블코인이 비자·마스터카드를 대체할 것인가?"라는 프레임으로 두 기술의 대결 구도를 설정하곤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연간 거래량이 20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지표를 제시하며 리테일 결제 거인들의 종말을 예견하는 주장이 대표적이다.¹²⁾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은 결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아키텍처 레이어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근본적인 오류다.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파괴하고 있는 대상은 프론트엔드의 카드 결제망(비자·마스터카드)이 아니라, 백엔드에서 작동하는 레거시 정산 인프라인 자동 청산소(Automated Clearing House, ACH)와 미 연준 결제망(Federal Reserve Wire Network, Fedwire)이다. 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제 프로세스를 ‘승인(Authorization)’과 ‘정산(Settlement)’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레이어로 분리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승인 단계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가맹점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승인 요청을 발급사로 라우팅하고, 발급사의 승인 또는 거절 응답을 다시 가맹점에 전달하는 실시간 메시징 네트워크로 기능한다. 따라서 카드 결제가 승인되는 순간 곧바로 자금이 이체되는 것은 아니며, 발급사는 해당 금액만큼 결제 한도를 차감하거나 지급을 보류해 둘 뿐이다. 실제 자금이 이동하는 정산 단계는 결제 승인 후 1~3영업일 뒤에 비로소 실행된다. 카드 결제망이 각 은행 간 순정산 금액을 계산하는 청산(Clearing) 과정을 거쳐 지시서를 전달하면, 실제 자금 이체는 ACH나 Fedwire(국경 간 결제에서는

12) 스테이블코인과 기존 카드 네트워크의 결제액 비교 논쟁 및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20조 달러 돌파에 관한 본문의 서술은 다음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Ciccomascolo, Giuseppe. "Crypto Goes Mainstream as Stablecoins Beat Visa and Mastercard in Volume: Report" CCN, June 11, 2025. 접속일: 2026년 8월 31일. <https://www.ccn.com/news/crypto/stablecoins-outpace-visa-mastercard-fortune-embrace-crypto/>

SWIFT¹³⁾)라는 레거시 레일을 타게 된다. 문제는 이 레거시 정산 레이어가 은행 영업시간이라는 제약에 갇혀 있어 처리 속도가 수일씩 걸리는 데다,¹⁴⁾ 다단계 중개 기관을 거치며 복잡하고 비싼 수수료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온체인 환경에서 USDT나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상에서 트랜잭션이 확정되는 순간 정산이 시차 없이 단번에 완결되지만, 레거시 카드 결제 시스템과 결합할 때는 승인된 개별 결제 건마다 즉각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카드 거래 환경에서는 결제 직후의 승인 취소나 당일 환불, 팁 추가 결제와 같은 사후 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초당 수만 건에 달하는 미세 거래마다 온체인 트랜잭션 가스비를 지출하는 것은 심각한 비효율을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의 크립토 카드 정산은 하루 동안 수많은 가맹점과 발급사 사이에서 발생한 수백만 건의 거래를 하나로 묶어 상계(Netting)한 뒤, 그 차액만을 하루에 한 번 온체인으로 송금하는 ‘일 단위 배치(Batch) 정산’ 방식을 채택한다. 비록 건별 실시간 정산은 아닐지라도, 이 방식은 레거시 정산 구조를 완전히 혁신한다. 기존 은행망(ACH/Fedwire)은 주말과 공휴일, 야간에 전산망이 멈춰 서며 며칠씩 정산을 지연시키지만, 블록체인 레일은 24/7/365 연중무휴로 가동되기 때문이다. 결국 카드 인프라에서 온체인 정산의 핵심 가치는 승인과 정산의 시차를 완전히 없애는 데 있다기보다, 은행 영업시간의 족쇄를 풀어 정산 주기를 ‘휴일 없는 일일 정산’으로 고정함으로써 레거시 정산망이 초래하던 수일간의 시차를 극적으로 제거한다는 데 있다.

FIGURE 07 스테이블코인 기반 카드 결제 및 정산 플로우



(출처: 비자, <https://corporate.visa.com/en/solutions/crypto/stablecoins/stablecoins-and-the-future-of-onchain-finance.html>)

- 13)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가 간 금융 거래에 필요한 결제 및 송금 메시지를 전송하는 글로벌 통신망이다. 실제 자금을 실시간으로 이동시키는 결제 레일이 아니라 금융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종 자금 정산은 여러 중개은행(Correspondent Banking)을 거치며 수일(T+2~5일)의 시차와 다단계 수수료를 발생시킨다.
- 14) 최근 미국 내에 도입된 FedNow나 RTP(Real-Time Payments) 같은 인가된 대형 은행들 간의 법정화폐 기반 실시간 정산망은 연중무휴 작동하지만, ① 국경 간 거래가 불가능한 국내 전용(Domestic-only) 레일, ②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성 부재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구축 중인 온체인 정산망처럼,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회원사 간 국경 없이 작동하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글로벌 단일 레일’의 정산 효율성을 따라잡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즉, 달러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온체인 정산은 레거시 정산망인 ACH나 Fedwire가 지닌 구조적 마찰을 상당 부분 완화해 주는 셈이다. 따라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자신들의 업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던 느리고 비효율적인 백엔드 정산 레일을 고성능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정산 인프라의 강력한 업그레이드 도구’다. 프론트엔드에서는 레거시 카드망이 보유한 가맹점 네트워크, 소비자 보호, 브랜드 신뢰, 사용자 경험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백엔드 정산만 블록체인 레일 위에서 처리하는 구조가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는 여전히 카드로 결제하고 점주는 익숙한 POS 단말기를 바라보지만, 백엔드에서는 기존에 주말과 공휴일로 인해 2~3일 이상 소요되던 정산 프로세스가 영업일 제약 없는 당일 정산으로 단축된다. 이는 먼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대 신용카드’라는 구도의 논쟁은 결제 아키텍처의 본질을 완전히 비껴가 있다. 이는 한쪽이 다른 쪽을 잠식하는 ‘대체’가 아닌, 서로 다른 레이어의 강점을 융합하는 ‘상호 보완’에 가깝다. 두 기술은 금융 스택의 서로 다른 레이어에서 전혀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결제 시스템의 다중 레이어를 명확히 바라보는 순간 불필요한 혼란은 사라지고, 정산 인프라의 파괴적 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진정한 기회가 눈앞에 들어오게 된다.

② 온체인 정산이 가져온 자본 효율성의 극대화

24시간 끊임없이 전 세계를 누비는 온체인 자산이 크립토 카드를 만나 가맹점에서 결제되는 순간, 레거시 은행 정산망과 마주하게 된다. 프론트엔드의 결제 승인은 단 2초 만에 이루어지지만, 백엔드 정산 인프라가 강제하는 시간적·구조적 지연은 온체인 생태계와 본질적인 불협화음을 일으킨다. 크립토 카드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아 지속 가능한 실물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백엔드 정산의 온체인화’가 필수적이다. 온체인 정산이 단순히 암호화폐로 결제한다는 상징성을 넘어, 레거시 결제망과 은행망이 수십 년간 강제해 온 자본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결정적 열쇠이기 때문이다. 백엔드의 정산 레일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설 때 비즈니스 현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유휴자본의 해방을 통한 운전자본 효율성의 극대화다.

전통적인 법정화폐 정산 환경에서 결제 부도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금융 비용은 고스란히 발급사의 몫이었다. 야간, 주말, 연휴에는 은행망(ACH, Fedwire 등)이 멈추기 때문에, 카드 결제망은 이 기간 동안 발생할 정산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발급사에 은행 업무가 중단된 기간에 비례하는 막대한 예상 결제액을 사전 예치금(Prefunding)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한다. 하루 예상 결제액이 100만 달러라면, 3일 연휴가 낀 주말에는 무려 400만 달러(금·토·일·월 거래분)의 현금을 금요일 저녁까지 계좌에 예치해 두어야 한다. 일일 결제액이 1,000만 달러, 1억 달러로 성장할수록 유휴 자본은 4,000만 달러, 4억 달러로 불어난다. 기업의 R&D나 사업 확장에 투입되어야 할 막대한 운전자본이 낡은 금융망의 시차를 메우기 위해 동결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카드 비즈니스가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형 은행들의 독점 영역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온체인 정산은 365일 연중무휴로 당일 정산을 완결한다. 주말이든 크리스마스 아침이든 상관없이 발급사가 카드 결제망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당일 발생한 대금을 일괄 송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요일 거래는 금요일에, 토요일 거래는 토요일에 정산되므로 수일 치의 자본을 미리 쌓아둘 필요가 완전히 사라진다. 주말마다 묶여 있던 수백만 달러의 사전 예치금이 즉각 가용 자본으로 전환되어 기업의 유동성과 수익성으로 직결된다.

나아가 온체인 정산은 카드 프로그램이 글로벌 확장 시 마주하는 ‘다중 사전 예치금’의 장벽을 근본적으로 허문다. 기존 법정화폐 체제에서 글로벌 카드 서비스를 구축하려면 환거래 은행 시스템(Correspondent Banking System)을 통과해야 했다. 예컨대 콜롬비아에서 발행된 카드로 미국 기업의 구독 서비스를 결제

할 경우, 현지 발급사는 뉴욕 환거래 은행에 계좌를 열고 페소를 달러로 환전하여 사전 예치금을 넣어두어야 했다. 보고타와 뉴욕 양쪽에 유휴 자금을 각각 묶어두는 이중 예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카드 서비스를 멕시코, 아르헨티나, 유럽 등 5개 지역으로 확장하면 5개국의 현지 은행 계좌마다 각기 다른 통화로 사전 예치금을 분산 예치해야 했으며, 이는 치명적인 자본 파편화와 환율 변동 리스크를 낳았다.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카드 결제망을 상대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온체인 정산을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글로벌 풀스택 발급사다. 크립토 카드의 세계에서는 사용자가 전 세계 어느 지역에 있든 로컬 통화 대신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지갑에 보유하고 결제하며, 발급사와 카드망 간의 백엔드 최종 정산 역시 동일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완결된다. 즉, 카드 결제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이 온체인 달러로 통일되는 것이다. 그 결과, 글로벌 카드망과의 온체인 정산 레일을 갖춘 풀스택 발급사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 현지 은행 계좌를 열고 예치금을 쪼개어 둘 필요가 없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단일 풀을 통한 정산 일원화를 달성함으로써,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유휴 자금 풀을 단 하나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지갑으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365일 상시 가동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기반 정산은 사전 예치에 묶이는 자금을 줄이고 환거래 은행망에 대한 의존을 낮춰, 카드 프로그램의 운영과 글로벌 확장을 뒷받침한다.

리딿페이와 이더파이를 통해 본 크립토 카드 비즈니스 지형

글로벌 크립토 카드 시장을 선도하는 리딿페이와 이더파이는 어떠한 아키텍처 차별화를 통해 각기 다른 비즈니스 지형을 구축해 왔는가? 페이먼트스캔(Paymentscan)의 데이터에 따르면 두 서비스는 글로벌 크립토 카드 시장의 결제액과 결제 건수 모두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며,¹⁵⁾ 100달러 내외의 일상적 소액 결제부터 1만 달러 이상의 고액 결제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두 서비스 모두 한국 거주자의 KYC와 실물·가상 카드 발급, 애플페이 연동을 지원하며, 리딿페이는 삼성페이도 지원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하다.¹⁶⁾

그러나 두 서비스가 크립토 자산을 결제로 연결하는 방식은 뚜렷하게 다르다. 리딿페이는 암호자산의 즉시 매도·환전을 기반으로 한 직불카드(Debit Card) 모델을 대표하는 반면, 이더파이는 DeFi 기반의 암호자산 담보 차입형 신용카드(Credit Card) 모델을 대표한다. 이러한 아키텍처의 분기는 각자가 겨냥한 시장의 서로 다른 경제적 동기와 수요에서 비롯된다. 리딿페이가 자국 통화의 불안을 극복하고 일상적인 달러 소비에 접근하려는 신흥국 일반 대중을 겨냥한다면, 이더파이는 시세차익 및 DeFi 운용 수익을 유지하면서 과세 마찰(Tax Friction)을 최소화하려는 크립토 네이티브 자산가를 겨냥한다. 비록 두 프로젝트 모두 직불과 신용 결제 옵션을 갖추고 있으나, 비즈니스의 무게중심을 ‘자산 매도 즉시 결제’와 ‘자산 담보 차입 결제’ 중 어디에 두었는가에 따라 서로 판이한 서비스 구조를 형성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결제 메커니즘과 타깃 시장의 상호작용을 분석의 틀로 삼아 두 프로젝트의 구조적 우위와 한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① 리딿페이: 신흥국의 디지털 달러 접근 인프라가 되다

페이먼트스캔 집계 기준, 2025년 리딿페이는 연간 29억 5천만 달러(약 4조 원) 이상의 카드 결제액을 처리하며, 경쟁사 13곳의 합산 거래량을 4배 이상 넘어서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리딿페이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러한 비대칭적 확장은 리딿페이가 서구권이 아닌 신흥국 시장이 겪고 있던 구조적 결핍에 집중하여 독보적인 제품-시장 적합성(Product-Market Fit)을 확보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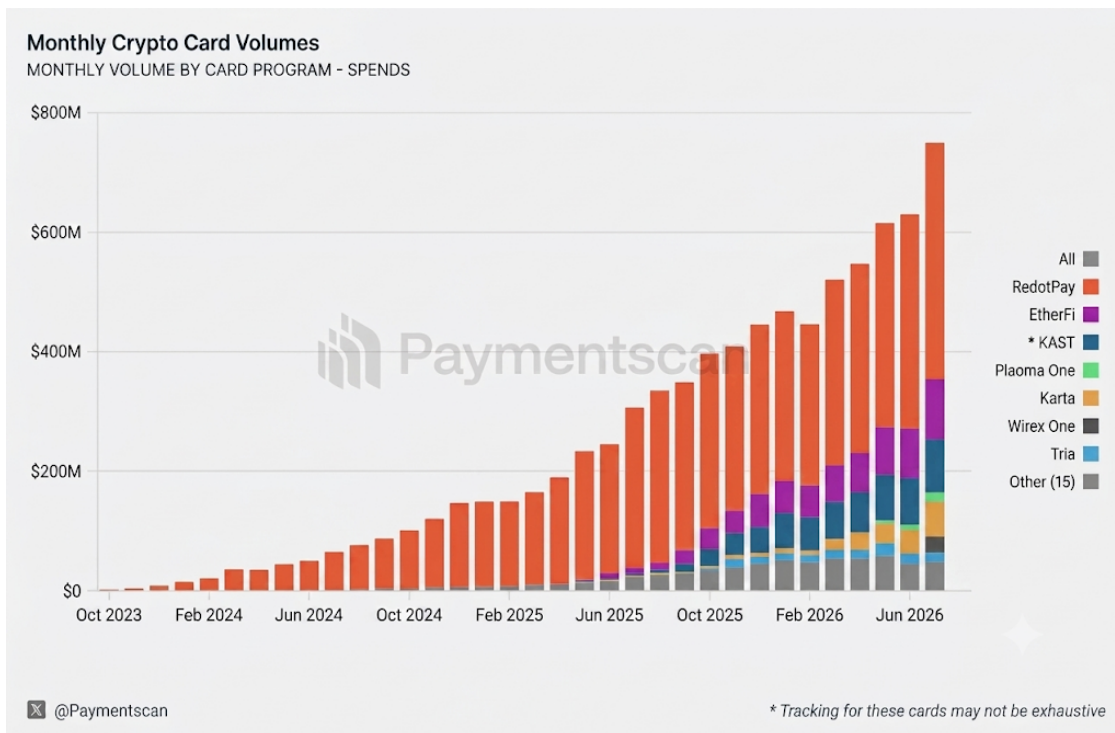
15) FIGURE 08과 FIGURE 09 참조.

16) 2026년 9월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리딿페이가 대한민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물 및 가상카드의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김정우. "[단독]리딿페이, 韓서 신규카드 발급 전면중단." 서울경제, 2026년 9월 15일. 접속일: 2026년 9월 15일.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1130>

17) Jun__Yoo. "Why Emerging Markets Matter: From Crypto Cards to Headless Merchants." X, June 30, 2026.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x.com/Jun__Yoo/status/2071818971213647992?s=20

FIGURE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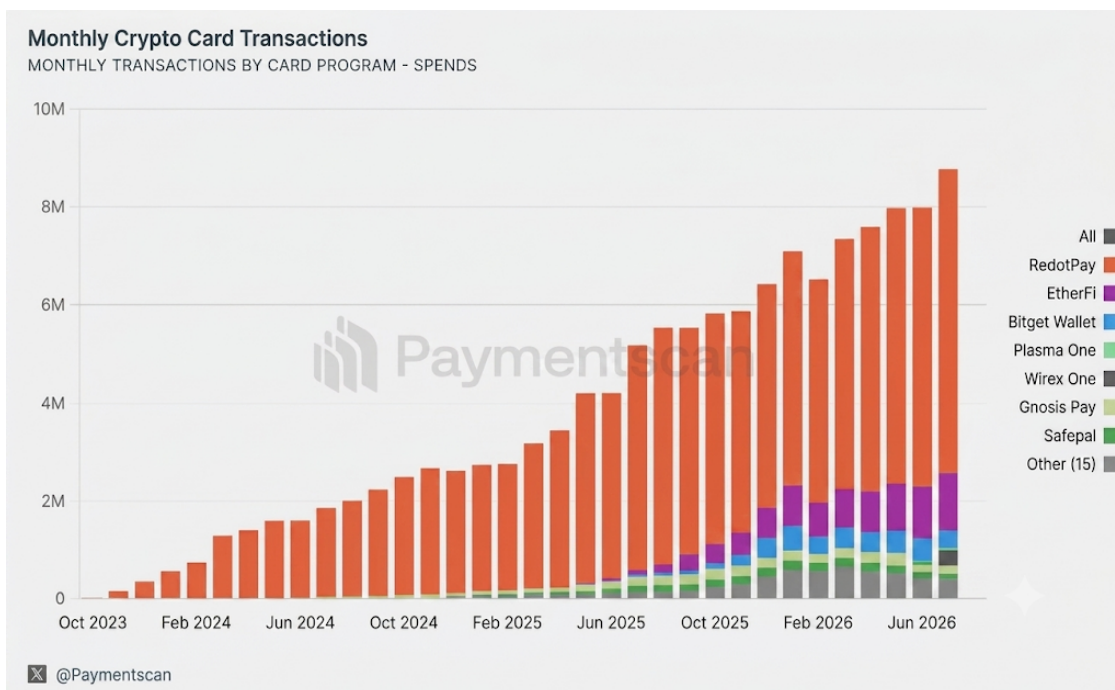
크립토 카드 발행사별 월간 결제액 추이



(출처: Paymentscan, 2023.10 ~ 2026.07)

FIGURE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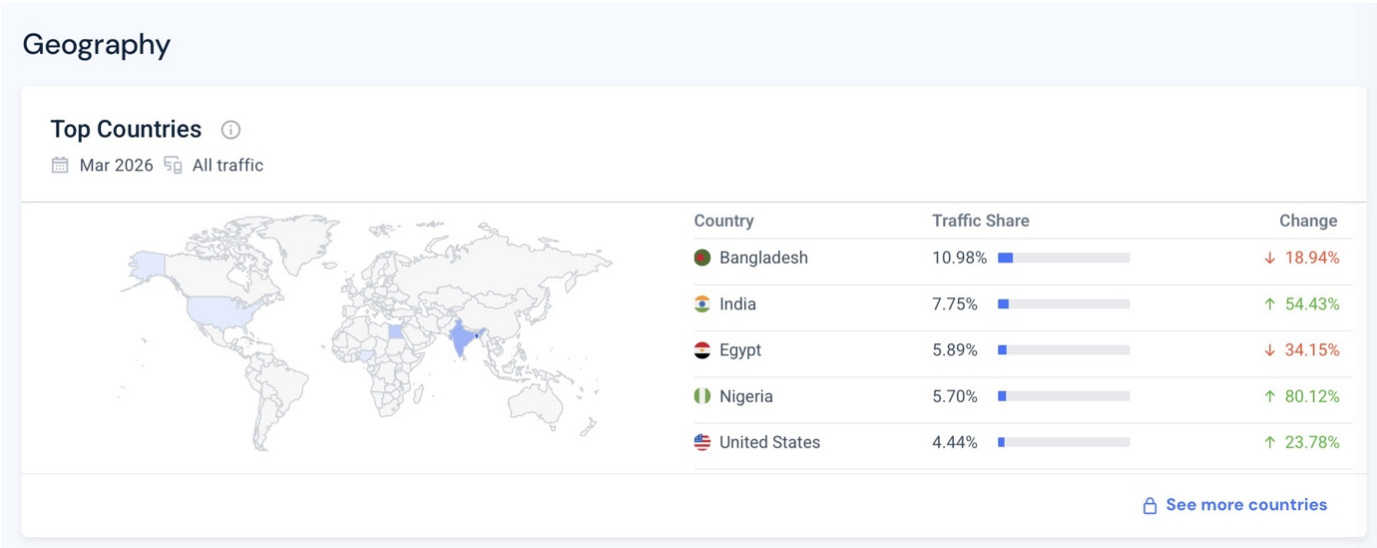
크립토 카드 발행사별 월간 결제 건수 추이



(출처: Paymentscan, 2023.10 ~ 2026.07)

실제 리닷페이 공식 웹사이트의 국가별 트래픽 데이터(Similarweb, 2026년 3월 기준)를 살펴보면 방글라데시(10.98%), 인도(7.75%), 이집트(5.89%), 나이지리아(5.70%) 등 신흥국 비중이 압도적인 반면, 미국 비중은 4.44%에 불과하다.¹⁸⁾ 이는 기존 금융망이 완비된 선진국에서 크립토 카드가 부가적인 선택지에 머무는 반면, 신흥국에서는 금융 공백을 메우는 필수재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화 가치 절하와 외환 통제를 겪는 신흥국 소비자에게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일상적 생존 수단이다. 이에 리닷페이는 사용자가 직접 감당해야 했던 번거로운 오프램프(Off-ramp, 암호화폐의 법정화폐 환전) 과정을 백엔드에서 자동화하여 가맹점 결제로 곧바로 연결해 주었다. 나아가 리닷페이는 지갑 간 내부 이체(Internal Transfer) 및 해외 송금(Crypto-to-Fiat Remittance), 현지 ATM 현금 인출 기능까지 통합 제공함으로써, 신흥국 사용자가 국경 간 자금 이동부터 실생활 현금화에 이르는 금융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FIGURE 10 리닷페이의 신흥국 중심 웹 트래픽 점유율 현황



(출처: Similarweb)

이처럼 실생활 지출과 직결된 신흥국 시장의 수요 특성은 리닷페이가 복잡한 금융 공학 대신 직불형 결제 아키텍처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게 된 결정적 이유다. 통화 불안을 겪는 신흥국 대중에게 필요한 것은 이자 농사(Yield Farming)나 고도화된 DeFi 프로토콜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관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일상에서 즉각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지출 도구였다.¹⁹⁾ 이러한 신흥국 특성에 맞춰, 리닷페이는 일반적인 온라인 마케팅 대신 풀뿌리 신뢰 네트워크를 파고드는 독자적인 유통 전략을 펼쳤다. 각국의 P2P 트레이더, 장외거래 네트워크, 지역 인플루언서를 공식 에이전트로 영입하고 카드 활성화와 연동된 수

18) FIGURE 10 참조.

19) 물론 리닷페이 역시 담보 기반의 신용 결제 기능인 ‘크레딧 모드(Credit Mode)’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별 LTV(담보인정비율, Loan-to-Value)가 USDT·USDC는 90%, BTC·ETH는 60%, 변동성이 큰 SOL·TRX는 40%로 제한되는 데다, 차입 금리가 일 0.05%(연 18.25% 수준의 고정 단리)에 달한다. 이는 온체인 머니마켓처럼 장기 레버리지 운용이나 자본 효율성을 도모하기보다는, 결제 후 며칠 내로 상환하는 초단기 소액 대출 용도에 머무르는 구조다. 결국 고금리와 담보 청산 위험을 수용하기 어려운 신흥국 일반 대중의 현실상, 자산을 실시간 청산해 지출하는 직불카드가 시스템의 실질적인 주력 엔진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수수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풀뿌리 오프라인 바이럴을 촉발했다. 여기에 2025년 2월 싱가포르 발급 인프라 기업인 스트레이츠엑스를 비자 BIN 스폰서로 확보²⁰⁾하며 글로벌 가맹점 수용성까지 완비했다. 결국 리닷페이 급성장은 암호화폐 결제의 대중화가 선진국의 기술적 호기심이 아닌, 금융 인프라가 결핍된 신흥국의 절박한 실수요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리닷페이는 신흥국에서 확보한 압도적인 결제 회전율을 바탕으로 다각화된 수수료 기반 수익 모델을 구축했다. 플랫폼의 주 수익원은 비자망 결제 시 배분 받는 가맹점 인터체인지 수수료(Interchange fee)와 자체 결제 처리 수수료이며, 자국 통화 환전 시 발생하는 다중 통화 외환 스프레드 마진이 핵심적인 현금 흐름을 지탱한다. 여기에 신규 유저 유입에 따른 가상 및 실물 카드 발급비, ATM 현금 인출 수수료, 크레딧 모드(Credit Mode)의 초단기 차입 이자가 더해져 결제량이 늘어날수록 플랫폼 매출이 정비례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다.

그러나 신흥국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성과 이면에는, 리닷페이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직불카드 전반이 지닌 태생적인 재무적·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변동성 암호화폐를 실시간 매도해 결제하는 방식은 결제 즉시 자산이 처분되므로, 추후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수반한다. 무엇보다 결제 승인 시점마다 자산 매도가 일어나 법정화폐로 실현되는 구조 특성상, 매 승인 건마다 과세 이벤트를 촉발해 상당한 세무 관리 부담을 안긴다. 이는 자산 보존과 절세를 중시하는 암호화폐 자산가층을 흡수하는 데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② 이더파이: DeFi에 일상 결제를 더해 한계를 넘어선 온체인 네오뱅크

리닷페이가 자국 통화 불안을 겪는 신흥국 대중의 ‘생존형 직불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 이더파이는 암호자산 매도에 따르는 기회비용과 과세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암호화폐 자산가층을 겨냥해 전혀 다른 금융 모델을 구축했다. 온체인에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통 금융에서는 이를 담보로 인정받지 못해 유동성을 확보할 길이 막혀 있던 자산가들에게, 이더파이는 ‘자산을 팔지 않고도 쓸 수 있는(Spend without selling)’ 온체인 네오뱅크(On-chain Neobank)²¹⁾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한다.

이더파이는 플랫폼 내 자산 규모를 약 10억 달러 수준으로 빠르게 확장하며, 볼트(Vault, 온체인 자산 운용 풀) 기반 DeFi 전략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인 플레이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²²⁾ 특히 이더파이의 ‘Earn’ 상품은 ETH, BTC, USD 기반 볼트에서 총 5억 달러 이상의 TVL(Total Value Locked, 총 예치 자산)을 기록하며 암호화폐 업계 내 동종 부문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²²⁾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유치했음에도, 초기의 이더파이 역시 여타 DeFi 프로토콜들이 겪던 구조적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사용자와의 관계가

20) Redot. "RedotPay Partners with StraitsX and Visa to Revolutionise Digital Spending" RedotPay, February 10, 2025. 접속일: 2026년 9월 10일. <https://www.redotpay.com/news/redotpay-partners-with-straitsex-and-visa-to-revolutionise-digital-spending>

21) 온체인 네오뱅크: 물리적 점포 없이 모바일·인터넷으로만 운영되던 1세대 네오뱅크(레볼루트, 카카오뱅크 등)에서 한 단계 나아가, 블록체인 인프라와 스마트 컨트랙트를 코어 बैं킹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차세대 금융 서비스. 사용자가 비수탁(Self-custody) 지갑이나 계정 추상화(Account Abstraction)를 통해 직접 자산 통제권을 가지며,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카드, DeFi 연동 예치, 국경 없는 즉시 송금 등을 지원한다.

22) Rain. "From Onchain Assets to Everyday Liquidity: How ether.fi Uses Stablecoin Cards to Drive Engagement, Revenue, and Retention." Rain Resources, 2026.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www.rain.xyz/resources/from-onchain-assets-to-everyday-liquidity-how-ether-fi-uses-stablecoin-cards-to-drive-engagement-revenue-and-retention>

지속적인 일상이 아닌 일시적인 이벤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강세장의 시세 급등, 단기 이자율 인센티브, 혹은 일회성 에어드랍 파밍과 같은 특정한 시장 이벤트가 발생할 때만 사용자가 반짝 유입되고, 목표한 수익이 실현되거나 보상이 종료되면 자금을 외부 거래소나 은행 계좌로 즉각 인출해 떠나버리는 간헐적이고 일회적인 관계가 반복되었다. 이로 인해 시장 침체기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자금 유출과 사용자 이탈을 줄이고, 이용자와 자금을 플랫폼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이더파이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이더파이는 비수탁형 카드 풀스택 발급 인프라 기업 레인과의 협업을 통해 결제 레이어를 프로토콜 내부에 직접 내재화하며 이 고질적인 난제를 풀어냈다. 시장 사이클에 따라 접속이 뜸해지는 온체인 금융 활동과 달리, 실생활 결제는 플랫폼에 지속적인 사용자 접점을 만들어내는 일상적 행동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더파이의 결제·카드 서비스인 이더파이 캐시(ether.fi Cash)는 사용자가 비수탁형 볼트 예치금을 비롯한 다양한 온체인 자산을 담보로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LTV)에 따라 차입 한도를 산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USDC를 빌려 카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 발급과 결제 처리는 레인의 인프라와 비자망의 연동을 통해 지원되며, 발급사와 비자 간에는 USDC 기반의 온체인 정산이 활용된다. 이때 차입된 USDC에는 연 4% 내외의 변동 이자가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DeFi를 통해 이자를 벌어들여주는 볼트에 예치된 온체인 자산을 매도하거나 번거롭게 법정화폐로 환전할 필요 없이 실생활에서 크립토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모든 카드 결제액에 대해 제공되는 3% USDC 캐시백 혜택은 강력한 일상적 소비 유인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이더파이는 외부로 빠져나가던 자금 유출을 줄이고 플랫폼 내에 유동성을 묶어두는 데 성공했다. 레인과의 협업으로 4주 만에 구축된 이더파이 캐시는 출시 30일 만에 거래량 100만 달러를 돌파하고 2026년 3월 기준 7만 5,000개 이상의 활성 카드를 확보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증명했다.²²⁾ 이러한 실생활 결제 레일이 결합되자 시장 등락과 무관하게 사용자가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강력한 락인(Lock-in) 효과가 형성되었고, 이는 이더파이의 USDC 기반 볼트인 LiquidUSD의 TVL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²²⁾ 결국 이더파이는 DeFi로 자산을 불러주는 볼트와 실생활 지출 창구인 카드를 하나의 스택으로 통합하며, 지속 가능한 체류형 플랫폼(Sticky Platform)이자 온체인 주거래 네오뱅크로 도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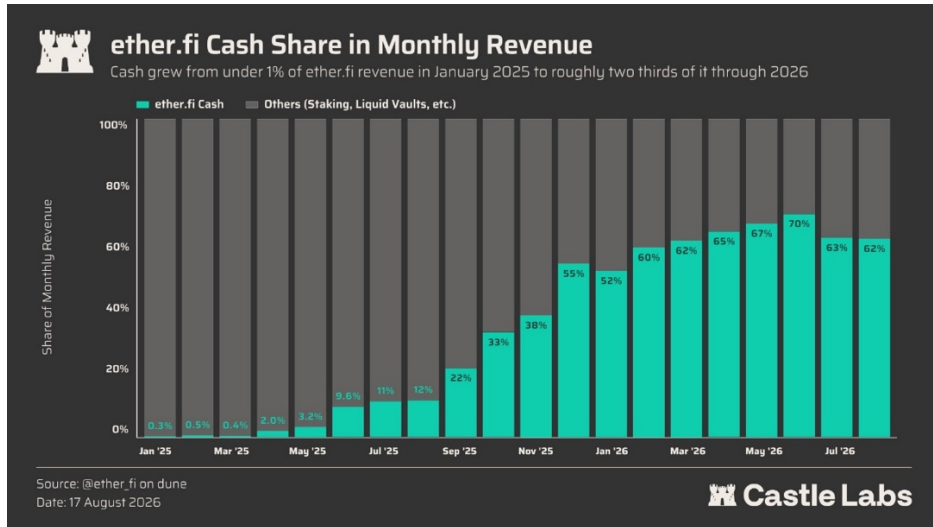
이러한 아키텍처 혁신은 이더파이의 매출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했다. 기존의 스테이킹이나 볼트 수익은 TVL 대비 낮은 운용 수수료에 의존하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이더파이의 캐시 부문은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가맹점 인터체인지 수수료, 담보 대출 이자 마진, 다중 통화 환전 스프레드 등 결제 회전율에 비례한 고마진의 실질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그 결과 2025년 초 1% 미만 수준이던 캐시 부문의 매출 비중은 2026년에 60%를 돌파하며, 기존 스테이킹과 볼트 수익을 압도하는 핵심 캐시카우로 자리 잡았다.²³⁾

최근 이더파이는 온체인 금융 인프라와 RWA(Real World Asset, 실물자산)의 결합을 한층 더 고도화하며 신용 대출의 효율성과 담보 범위를 확장했다. 우선 옵티미즘(Optimism) 레이어2 기반의 에이브(Aave) V4 머니마켓과 연동하여 정산 및 차입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 특히 카드 결제 건별로 자동 차입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사용자가 부여받은 총 LTV 한도 내에서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규모만큼 자유롭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으며, 그 결과 USDC 대출은 연 3~4%, wETH 대출은 연 1~1.5% 수준의 경쟁력 있는 변동 금리를 구현했다. 나아가 엑스스톡스(xStocks)와의 협업을 통해 프로토콜의 담보 기반을 크립토 자산에서 전통 금융 자산으로 확장했다. 이제 사용자는 앱 내에서 미국 주요 지수(QQQx, SPYx)와 실물 금(PAXGx), 단기 미국 국채(TBLLx) 등 토큰화된 RWA를 직접 거래하고, 이를 담보로 유동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이더파이는 암호자산과 전통 금융 자산을 아우르는 종합 포트폴리오 담보 환경을 완비하며, 온체인 네오뱅크로서의 자산 관리 및 대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23) FIGURE 11 참조.

FIGURE 11

이더파이의 부문별 매출 구성비 변화



(출처: Castle Labs, https://x.com/castle_labs/status/2089344374048170081?s=20)

이더파이가 제공하는 자산 담보 차입 결제가 크립토 자산가들에게 제공하는 효용은 명확하다. 그 핵심은 ‘소비 행위’와 ‘과세 이벤트’의 구조적 분리에 있다. 즉, 결제 시 자산 처분 대신 신규 부채를 일으키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매 결제 승인 시점마다 촉발되던 과세 이벤트²⁴⁾를 합법적으로 미래로 이연시킨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소비에 종속되어 비자발적으로 결정되던 과세 시점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개인별 세무 계획 및 시장 환경에 맞춰 가장 유리한 시기에 선택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여 LTV를 조절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다. 동시에 담보 자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유지함으로써 미래의 시세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과 볼트의 DeFi 운용 수익을 고스란히 보존한다. 더욱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LTV 한도 내에서 일상 지출액만큼만 부분 차입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가 벌어들이는 DeFi 운용 수익이 소액 차입금에 부과되는 대출 이자를 가볍게 상회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부를 축적하는 담보 자산을 훼손하지 않고도 일상적인 소비 유동성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담보 차입 결제 모델 역시 명확한 구조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담보 자산의 가격 변동성에 기인하는 연쇄 강제 청산이다. 급격한 하락장으로 담보 가치가 폭락해 프로토콜의 청산 LTV 임계치에 도달할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담보 자산이 시장가에 즉각 강제 매각된다. 이는 원금 손실을 확정 짓는 데 그치지 않고, 강제 처분 과정에서 그동안 이연시켜 왔던 막대한 세금이 일시에 실현되는 이른바 ‘세금 폭탄’으로 번질 수 있다. 여기에 다층화된 DeFi 인프라에서 비롯되는 아키텍처 리스크도 상존한다. 에이브 V4 머니마켓, 옴티미즘 레이어2 롤업 브릿지, 담보 가치를 산정하는 오라클 등 복잡하게 얽힌 컴포넌트 중 단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만 취약점이나 디페깅이 발생해도 결제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에 빠질 수 있다. 결국 이더파이의 온체인 네오뱅크 모델은 고도화된 자본 효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시스템 내부의 기술적 복잡성과 급격한 시장 변동성이라는 구조적 비용을 동시에 감내해야 하는 양면성을 띤다.

24) 현행 세법 체계에서 암호화폐 결제는 단순한 대금 지급이 아닌 ‘자산의 처분(양도)’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미국 국세청(IRS) 기준 암호화폐로 물품을 구매하면 취득가와 결제 시점 시세의 차액에 대해 최대 37%(단기) 또는 20%(장기)의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즉각 발생하며, 2027년 시행 예정인 한국 세법 역시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처분 이익에 대해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구조다.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그리고 탈출구로 부상한 크립토 카드

한국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망에 편입될 예정이나, 제도의 구체화와 함께 시장에서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을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에 따라, 결손금 이월공제가 불가능하고 기본공제 한도 역시 연간 250만 원에 불과한 제도적 역차별이 그 시발점이다. 2026년 상반기에만 약 47조 원에 달하는 국내 투자자의 자산이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간 사실은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방증한다.²⁵⁾

여기에 과세 행정의 구조적 한계가 더해지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과세 당국은 역외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다자간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²⁶⁾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이는 고객 거래를 중개하는 중앙화된 사업자에게만 보고 의무를 부과할 뿐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탈중앙화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는 여전히 정보 수집의 사각지대로 남는다. 결국 ‘국내 거래소에 자산을 남겨둔 투자자만 투명하게 세금을 내고, 탈중앙화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이전한 투자자는 과세망을 벗어난다’는 형평성 논란이 촉발되었고, 이러한 규제적 역차별에 대한 반발 심리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과세 행정의 감시망을 구조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탈출구(Exit)’를 모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 사업자가 발급하는 크립토 카드가 점차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투자자들이 크립토 카드를 탈출구로 삼는 이유는 결제 정보와 납세자 신원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국내 카드 인프라는 결제 정보와 납세자 신원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구조다. 소비자가 국내 카드로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해당 이용실적은 카드사가 발급 단계에서 확보한 회원의 본인확인정보와 연계되어 관리된다. 개인별 카드 사용금액은 법정 자료제출 체계를 통해 국세청에 제공되며, 이는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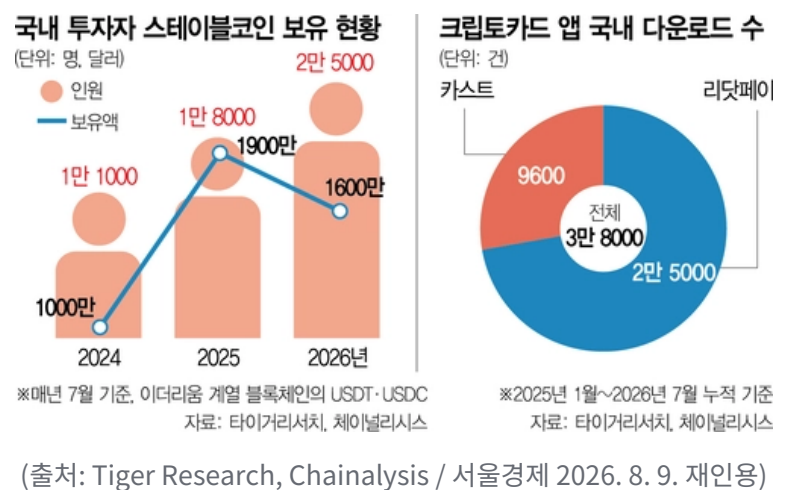
25) 도예리. "상반기 47조 해외로...韓 코인 투자자 떠나는 이유는" 서울경제, August 1, 2026. 접속일: 2026년 9월 10일.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4579>

26) CARF는 기말 ‘계좌 잔액(Balance)’을 수집하는 기존 은행권의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과 달리, 가상자산 매매·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연간 ‘거래 활동 흐름과 총 처분 대금’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보고대상 가상자산 사업자(RCASP, Reporting Crypto-Asset Service Provider)는 ① 납세자 식별 번호(한국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②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법정화폐로 환전하거나 실물 결제에 사용한 연간 총액, ③ 이종 가상자산 간 교환액, ④ 외부 개인지갑 이체 식별 데이터를 집계하여 납세자의 실거주지국 과세당국(한국 거주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한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 주요국은 2027년에 첫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을 실시하지만, 해당 교환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거래 내역부터 의무 수집되므로 실질적으로 2026년도 거래분부터 과세당국의 추적망에 포함된다. 반면, 플랫폼 내 미처분 자산 잔액, 콜드월렛에 단순 보관된 자산, 중앙 중개자 없는 순수 DeFi 거래 및 비금융 NFT는 현재 보고 범위에서 제외된다.

소득과 소비 규모의 불일치를 식별하고, 자금출처 검증이나 탈루 혐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기반이 된다.²⁷⁾

반면 크립토 카드를 포함한 해외 발급 카드는 국내 결제망을 통해 거래 정보만 집계될 뿐, 카드 명의자의 인적 사항은 해외 발급사 서버에 격리되어 국내 당국과 공유되지 않는다. 국내 가맹점에서 크립토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국내 결제 매입망과 과세 당국 전산망에 남는 기록은 ‘마스킹 처리된 카드 번호, 거래 일시, 승인 금액, 통화 코드, 가맹점 정보’에 불과하다. 정작 그 카드를 사용한 주체의 구체적인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정보)는 국내 결제망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고객의 신원 데이터는 전적으로 해외 발급사의 데이터베이스 내에만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제망은 글로벌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행정 전산망은 국경에 가로막혀 분리되어 있기에, 당국이 특정 탈세 혐의를 포착해 해외 금융기관이나 글로벌 카드망에 개별 공조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일상적인 결제 내역만으로는 실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

FIGURE 12 국내 투자자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현황 및 주요 크립토 카드 앱 국내 누적 다운로드 추이



결국 온체인에서는 DeFi를 통해 자산 형성 과정을 가리고, 오프라인에서는 크립토 카드로 신원 식별을 차단한 채 소비하는,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난 우회로가 구축된 셈이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주요 크립토 카드 앱의 국내 누적 다운로드 수가 4만 건에 육박하는 현상은,²⁸⁾ 신기술에 기민한 크립토 네이티브의 단순한 호기심이나 편의성 추구가 주된 원인이겠으나, 결제 데이터와 신원 식별 데이터가 결합되지

27) 국내 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국내 카드사)이 발급한 카드로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해외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아웃바운드 거래)에는 관세청 및 국세청에 대한 일정한 자료제공·통보 기준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6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3조의2에 근거하여, 국내 거주자가 국내 카드로 해외에서 건당 800달러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단기카드대출 또는 외국통화를 인출할 때 관련 거래 내역과 인적 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다. 이와 별도로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0-6조에 따라, 카드 발행업자는 개인별·법인별 연간 대외지급 및 해외 외국통화 인출 내역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통보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해당 대외지급 실적(해외 외국통화 인출 실적 포함)이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크립토 카드를 포함한 해외 사업자가 발행한 카드를 국내 거주자가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거래(인바운드 거래)는 국내 발급 카드의 해외 대외지급과는 거래 구조가 다르므로, 위와 같은 관세청의 건당 800달러 초과 자료제공 체계 및 국세청·관세청에 대한 연간 1만 달러 초과 통보 체계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8) FIGURE 12 참조. 김정우. "달러코인 이용 확대에...국내 코인카드 보유자 4만명 육박." 서울경제, 2026년 8월 9일. 접속일: 2026년 9월 1일.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7312>

않는 인프라의 단절을 활용해 과세망 밖에서 역외 자산을 실물 소비로 전환하려는 잠재적 수요 또한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제정보와 신원정보의 단절이 해외 발급 크립토 카드를 통한 거래를 영구적으로 과세·감독의 사각 지대에 두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인 소액 결제는 개별 거래를 추적·검증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과 집행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과세당국의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다뤄질 수 있다. 그러나 향후 OECD의 CARF를 비롯한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이 확대되고, 해외 발급사나 관련 사업자가 관할국의 법령에 따라 고객 및 거래정보를 과세당국에 제공하게 되면 과거 거래와 관련 소득·자산 신고의 적정성이 사후적으로 검증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는 정보의 단절은 영구적인 과세 공백이라기보다, 크립토 결제 기술의 확산과 국가 간 정보 연계 체계의 정비 속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결론

크립토가 걸어온 길은 ‘탈중앙화 P2P 결제’라는 이상론이 실물 경제의 복잡한 현실과 마주하며 겪은 필연적인 진화의 과정이었다. 비트코인이 꿈꾸었던 중개자 없는 결제는 기존 금융 질서를 단순히 해체하는 대신, 수십 년간 축적된 레거시 결제망의 ‘소비자 보호와 신뢰 인프라’를 지렛대 삼아 현실 속으로 침투하는 실용적인 타협점을 찾아냈다. 크립토 카드는 바로 이러한 이상과 현실이 맞물려 만들어낸 가장 구체적인 결과물이다.

크립토 카드가 바꾼 본질은 명확하다. 사용자가 자신의 온체인 자산을 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환전이나 실명 계좌 기반의 은행 출금 절차를 일일이 거치지 않고도, 글로벌 카드망을 매개로 일상적인 구매력으로 직접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프론트엔드에서는 기존 카드의 익숙한 결제 경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백엔드에서는 해외 발급 인프라와 온체인 유동성이 결합한다. 즉, 크립토 카드는 탈중앙화 자본이 레거시 결제망의 보편적 수용성을 빌려 실물 경제의 틈새로 안착하는 과정에서, 국가 통제를 우회하는 ‘금융의 트로이 목마’이자 역외 유동성을 일상 소비로 직접 연결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결제 인프라의 확산은 기존 규제 체계와 새로운 마찰을 만들어낸다. 문제는 이 하이브리드 구조가 기존 금융·과세 행정의 자금의 흐름을 포착해 온 방식과 정확히 맞물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풀스택 발급 인프라가 카드 발급과 고객확인, 결제 프로세싱, 환전과 정산을 해외 플랫폼에 수직 통합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체인 정산이 현지 은행계좌와 환거래 은행망에 대한 의존을 낮출수록 기존 금융 기관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던 자금이동 정보의 포착 지점도 함께 줄어든다. 사업자에게는 비용 절감과 자본 효율성의 혁신이지만, 규제 당국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정보의 단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급된 크립토 카드를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결제 기록은 국내 매입망에 남지만 이를 해외 발급사가 보유한 이용자의 신원 정보와 브랜드 제휴사가 보유한 온체인 자산 정보까지 연결해 파악하기는 어렵다.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특정 해외 크립토 카드 발급사의 결제 승인을 제한하거나 가맹점 매입을 차단하는 등의 직접적인 행정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특정 사업자가 아니라 신원정보는 해외 발급 인프라에 머물고 자금은 온체인에서 이동하는 구조 자체에 있는 만큼,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더라도 발급사·BIN·카드 프로그램을 달리한 새로운 서비스에서 동일한 정보 단절이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을 특정 서비스를 하나씩 차단하는 데만 두어서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다. 규제의 목표는 크립토 카드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체인 자산이 해외 발급 인프라를 거쳐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끊어진 ‘사람-자산-거래’의 연결고리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외 발급 크립토 카드의 국내 사용에 대한 정보 포착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를 포함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²⁹⁾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ARF를 통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도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일정 잔액 이상의 계좌를 대상으로 한 본인 신고 방식이고, CARF는 연간 가상자산 매도 및 환전 총액 정보의 국가 간 교환에 국한되어 있어, 암호화폐 카드를 통한 세부 결제 내역은 물론 실제 사용자의 신원과 카드에 연동된 지갑의 자금 흐름까지 파악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향후에는 기존 국제 정보교환 체계를 활용하되 해외 발급사 및 브랜드 제휴사와의 정보협력 및 자료확보 방안을 보완하고, 거래 규모와 빈도, 자금 세탁 및 조세회피 위험에 비례해 정보보고 범위를 설정하는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암호화폐 카드의 경제적 실질에 맞춰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27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매매와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유 가상자산을 매도해 결제대금을 충당하는 직불형 암호화폐 카드는 그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 현행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가상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담보로 맡긴 뒤 스테이블코인이나 법정화폐를 차입해 소비하는 신용형 모델은 카드 사용 그 자체만으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담보의 청산·상환 등 후속 단계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복합적인 DeFi 연계 거래에 대해 현행 과세제도가 암호화폐 카드는 구체적인 결제 구조별 판단기준까지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암호화폐 카드 사용’이라는 외형을 일률적으로 과세하기보다 자산 매도, 담보 설정, 차입, 담보 청산 및 상환 등 각 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과세 사건을 구성하는지 명확한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신고 및 자료제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제 준수형 암호화폐 카드 결제·정산 인프라가 국내에서도 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험의 경로를 구체화해야 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을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대상으로 두고 전문인력·전산설비와 사업계획 등 진입요건을 요구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규율을 적용받는다. 한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기존 금융규제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제특례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카드 발급, 가상자산 환전, 스테이블코인 정산을 하나의 서비스로 결합하는 풀스택 암호화폐 카드 사업모델을 어떤 인허가 조합과 책임체계 아래에서 허용할 것인지 명확한 제도적 경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규제 준수형 암호화폐 카드 인프라는 단순히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결제 편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해외송금과 달러 기반 가치 저장 등 기존 금융서비스가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수요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보관·환전, 국경 간 송금, 카드 발급과 결제에 각각 적용되는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와 외국환거래 규율, 여신전문금융업 규율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업권을 즉시 신설하기보다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일정한 범위에서 사업모델을 먼저 검증하고, 고객확인·자금세탁방지,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호, 과세자료 제출, 결제·정산 안정성 등 핵심적인 금지·준수사항은 엄격히 설정하되 그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는 카드와 온체인 정산의 결합 방식 자체를 폭넓게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접근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원칙중심·위험비례적 규율은 해외 서비스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규제의 시야 안에서 경쟁 가능한 대안을 육성하는 동시에 새로운 결제 인프라에 대한 감독 접점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9) 최욱. "해외계좌 잔액 5억 넘으면 이달 말까지 신고...올해부터 해외신탁 포함." 연합뉴스포맥스, 2026년 6월 4일. 접속일: 2026년 9월 22일.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8273>

결국 크립토 카드가 한국에 던지는 질문은 ‘허용할 것인가, 차단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이 아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국경을 전제로 설계된 금융 행정의 국경 없이 이동하는 온체인 자본의 흐름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정보의 단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다. 자금의 이동 방식은 이미 기존 금융망의 경계를 넘어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추적하고 과세·감독하는 규제 체계는 아직 그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금의 흐름을 과거의 금융 경계 안으로 억지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흐름을 포착하면서 과세의 형평성과 금융 혁신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인프라를 재설계하는 일이다.

참고문헌

- 김경민. "내년 코인 과세 시작인데...美 거래정보는 2029년에야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6년 9월 20일. 접속일: 2026년 9월 22일. <https://busan.fnnews.com/news/202609181324478898>
- 민서연. "[논란의 코인 과세]③ ‘큰 손’은 해외로 가는데... 협조 안 되면 구멍 송송." 조선비즈, 2026년 8월 30일. 접속일: 2026년 9월 1일.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6/08/30/2ZWI4KVPAREOVC24OWZ4ZNI2HM/>
- 진욱. "해외서 번 코인, 국내서 ‘썩’...과세 사각지대 코인카드 봄 오나." 블루밍비트, 2026년 8월 20일. 접속일: 2026년 9월 1일. <https://bloomingbit.io/feed/news/118712>
- 한지혜. "실물 결제 존재감 키우는 크립토 카드... ‘1억 달러→15억 달러’ 급성장." 블록체인투데이, 2026년 1월 19일.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50>
- 한순구. "코인카드까지 4만명 육박하는데 과세 또 유예?...야당發 감세 법안에 ‘조세 형평성’ 도마." 녹색경제신문, 2026년 8월 11일. 접속일: 2026년 9월 1일.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47312>
- Ashikuzzaman. "The Anatomy of the Swipe: Making Money Move by Ahmed Siddiqui." Leader's Whiteboard, May 25, 2020. 접속일: 2026년 9월 22일. <https://ashikuzzaman.com/2020/05/25/the-anatomy-of-the-swipe-making-money-move-by-ahmed-siddiqui/>
- BitKE. "RedotPay Reportedly Dominates Crypto Card Usage (Over 80%) as Emerging Markets Drive Demand." BitKE, April 11, 2026.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bitcoinke.io/2026/04/redotpay-dominates-crypto-card-usage/>
- Crossmint. "Are Stablecoins Replacing Visa and Mastercard?" Crossmint Learn, September 30, 2025.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www.crossmint.com/learn/are-stablecoins-replacing-visa-and-mastercard>
- Dempsey, Connor. "The Anatomy of a Stablecoin Card Swipe." Rain Resources, n.d.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www.rain.xyz/resources/the-anatomy-of-a-stablecoin-card-swipe>
- Ether.fi. "How Does Collateral and Borrowing Work." Ether.fi Help Center, June 19, 2026.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help.ether.fi/en/articles/304388-how-does-collateral-and-borrowing-work>
- Ether.fi. "Understanding Your Cash Card: Borrow Mode vs. Direct Pay Mode." Ether.fi Help Center, April 2, 2026.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help.ether.fi/en/articles/326983-understanding-your-cash-card-borrow-mode-vs-direct-pay-mode#h_a5cb781854
- Insights4vc. "The State of Stablecoin Cards." insights4vc, January 22, 2026.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insights4vc.substack.com/p/the-state-of-stablecoin-cards>
- Jo, Jay. "KRW 700 Trillion Abroad: The Market Korea Missed." Tiger Research, August 11, 2026. 접속일: 2026년 9월 14일. <https://reports.tiger-research.com/p/2026-korea-exodus-eng>
- Kim, Henry, and Ryan Yoon. "Still 1990: Crypto Cards: \$1.5 Billion a Month, but Not Yet Infrastructure." Tiger Research Reports, June 30, 2026. 접속일: 2026년 9월 10일. <https://reports.tiger-research.com/p/still-1990-crypto-cards-clear-15-eng>
- King, Jonathan. "Disruption or Distraction? Why Stablecoins Haven't Shaken the Card Networks." Third Bridge Perspectives, January 27, 2026.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www.thirdbridge.com/en-us/about-us/media/perspectives/disruption-or-distraction-why-stablecoins-haven-t-shaken-the-card-networks>

Kuhn, Daniel. "Ether.fi adds tokenized stocks, metals and Aave-powered portfolio loans in latest 'neobank' expansion." The Block, August 13, 2026.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www.theblock.co/news/defi/2026-08-13-ether-fi-adds-tokenized-stocks-metals-and-aave-powered-portfolio-loans-in-latest-neobank-expansion-411704>

Nelson, Jason. "Ethereum DeFi Platform Ether.fi Adds Tokenized Stocks and Portfolio-Backed Loans." Yahoo Finance, August 13, 2026.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finance.yahoo.com/markets/crypto/articles/ethereum-defi-platform-ether-fi-140103543.html>

Rain. "Fiat vs. Stablecoin Cards: What the Difference Means for Your Business." Rain Resources, n.d.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www.rain.xyz/resources/fiat-vs-stablecoin-cards>

Rain. "From Launch to \$1M in 1 Month — Here's How ether.fi Did It." Rain Resources, June 11, 2025.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www.rain.xyz/resources/from-launch-to-1m-in-1-month---heres-how-ether-fi-did-it>

RedotPay. "Unlock Your Credit Power: RedotPay Launches the Credit Account." RedotPay News, June 19, 2025.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www.redotpay.com/ro/news/unlock-your-credit-power-redotpay-launches-the-credit-account>

Sankrit K. "Visa and Mastercard Stablecoin Settlement: What It Means for Payments." Transak Blog, June 13, 2026.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transak.com/blog/visa-mastercard-stablecoin-settlement>

Siddiqui, Ahmed. *The Anatomy of the Swipe: Making Money Move*. Washington, D.C.: New Degree Press, 2020.

StraitsX. "StraitsX Partners with RedotPay and VISA to Advance Digital Asset Payments." StraitsX Blog, February 11, 2025. 접속일: 2026년 9월 10일. <https://www.straitsex.com/blog-post/straitsex-partners-with-redotpay-and-visa-to-advance-digital-asset-payments>

StraitsX. "Why Full-Stack Issuing Is Becoming the New Standard for Stablecoin Card Programs." StraitsX Blog, June 26, 2026.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www.straitsex.com/blog-post/full-stack-stablecoin-card-programs>

Visa. "Visa Launches Stablecoin Settlement in the United States, Marking a Breakthrough for Stablecoin Integration." Visa Press Releases, December 16, 2025. 접속일: 2026년 8월 18일. <https://usa.visa.com/about-visa/newsroom/press-releases.releaseId.21951.html>

Zug Notes. "What CARF Actually Reports About You: A Plain Reading of the Framework for Individuals." Zug Notes, November 18, 2025. 접속일: 2026년 9월 14일. <https://zugnotes.com/posts/carf-individual-reporting-crypto/>

P2P 결제의 이상, 암호화폐 카드의 현실

크립토 카드가 드러낸 국경 기반 과세체계의 정보 단절

Researcher

박민구 Mingu Gordon Park mingupark1221@gmail.com

Corresponding Author

오태민 Taemin Oh

Editor

진성훈 Sunghoon Jin

면책 고지

이 보고서의 견해와 해석은 저자 개인의 것이며, 메타노미아와 저자의 소속 기관인 한양대학교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